

1. 제정 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8.27. 공포)되었고, 법 시행일에 맞춰(2020.8.28.)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등 절차, 해역별·기상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정 목적 및 조업한계선 등에 대한 정의(안 제1·2조)
- 나. 어선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제출 방법 및 어선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세부절차(안 제4·5·6조)
- 다.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가능한 구체적 절차(안 제7조)
- 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 예외 사유(안 제8조)
- 마. 출어등록의 유효기관(안 제9조)

- 바. 일시적 조업·항해의 제한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 사. 서해접경해역의 통제어장 범위,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지도 절차·방법(안 제11·12·13조)
- 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 미통지시 위치확인 방법 등(안 제15·16조)
- 자.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가능 대상 사업(제17조)
- 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1, 별도1 및 별도2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3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유선박
-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어선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어선안전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국회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의 출입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가 선장의 주거지와 인접하여 출입항하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항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어선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로 자동출입항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2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 및 항행 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안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경우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허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출입항로를 항해하는 경우

제9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할 안전본부는 해당지역을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이를 무선설비, Fax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 해역의 시간, 기간 및 범위
3. 기타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어장) 법 제1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도서와 그 주변해역(제8조제1항에 따른 조업 및 항행 할 수 있는 어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1. 백령도
2. 대청도
3. 소청도
4. 연평도
5. 강화도

제12조(출입항 통제의 방법) ①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어장(이하 “통제 어장”이라고 한다)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항포구의 출입항을 관리한다.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보 및 작전상 통제 어장에 대한 어선의 출

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 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업 지도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관할 지자체장”라 한다)은 통제 어장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조업구역을 이탈한 어선에 대한 복귀 명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보 및 작전상 필요한 경우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통제 어장의 안전조업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조업보호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에 동해조업보호본부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 조업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을 조업보호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조업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호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조업보호본부장은 조업보호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회의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출항하는 어선은 출항지를 관할하는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치(위도와 경도를 말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출항 또는 최종 위치통지 시각을 기점으로 24시간을 1일로 한다.

1. 특정해역 출어선: 1일 3회 이상(매 통지 간 최소 6시간 이상 간격)
 2.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1일 2회 이상(매 통지 간 최소 8시간 이상 간격)
 3. 일반해역 출어선: 1일 1회 이상(매 통지 간 최소 12시간 이상 간격)
- ③ 기상특보시에 조업 또는 항행중인 어선은 전 해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통지 시간은 기상특보 발효시간을 기점으로 한다.

1. 풍랑특보: 매 12시간 간격
2. 태풍특보: 매 4시간 간격

④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와 제3항에 따른 위치통지가 겹칠 경우 짧은 간격의 하나의 위치통지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항지 관할 안전본부 또는 해역 관할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치확인 방법 등) ① 출항지 또는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는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활용 등의 방법으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항지 또는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는 위치통지를 미이행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제1항에 따른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어선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 및 관할 어업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정해역 출어선 : 위치통지 미이행 후 6시간 경과 시
 2.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위치통지 미이행 후 8시간 경과시
 3. 일반해역 출어선 : 위치통지 미이행 후 12시간 경과 시
 4. 풍랑특보시 출어선 : 위치통지 미이행 후 12시간 경과시
 5. 태풍특보시 출어선 : 위치통지 미이행 후 4시간 경과 시
- ③ 안전본부는 어선 위치보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의 진흥사업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3. 안전장비 및 설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의 사고에

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출입항 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출입항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업무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 교신가입 또는 위치통지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 및 구조에 관한 업무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를 “(여객선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을 “여객선에 대한”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목차

별표 번호	별표 제목
1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2	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3	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4	조업자제해역의 범위(제2조제4항 관련)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도 번호	별도 제목
1	동해조업한계선도(제2조제1항 관련)
2	서해조업한계선도(제2조제1항 관련)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2]

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동해특정해역: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내의 영역	서해특정해역: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내의 영역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나. 북위 38도 00분 10.06초, 동경 132도 49분 50.53초 다. 북위 38도 00분 09.97초, 동경 130도 09분 51.38초 라. 북위 38도 15분 09.86초, 동경 129도 59분 51.43초 마. 북위 38도 15분 15.84초와 육안과의 교차점	가.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나. 북위 37도 00분 10.28초, 동경 125도 59분 52.77초 다. 북위 37도 00분 10.25초, 동경 123도 59분 53.42초 라.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조업한계선(제2조제1항 관련)

동해조업한계선: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서해조업한계선: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가.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나.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다. 미법도 최동단 라. 서검도 최동단 마. 불음도 최남단 바. 주문도 최서단 사. 주문도 최남단 아.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자.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차. 북위 37도 31분 31.06초, 동경 126도 02분 52.74초 카.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59분 52.76초 타. 북위 37도 30분 10.07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파. 북위 37도 25분 10.10초, 동경 125도 49분 52.81초 하. 북위 37도 25분 10.08초, 동경 124도 43분 33.18초 거. 북위 37도 44분 54.94초, 동경 124도 43분 33.17초 너. 북위 37도 47분 54.92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더. 북위 37도 52분 09.89초, 동경 124도 39분 38.19초 러. 북위 37도 55분 09.87초, 동경 124도 36분 59.20초 머. 북위 37도 55분 09.86초, 동경 123도 59분 53.41초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3]

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동해조업자제선: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서해조업자제선: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가. 북위38도33분09.83초, 동경132도34분07.58초 나. 북위38도33분09.84초, 동경132도59분38.45초 다.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 라.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1초 마.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 바.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 사. 북위40도33분09.16초, 동경135도59분49.33초 아. 북위42도00분08.60초, 동경136도49분48.92초 자. 북위42도00분08.60초선	가.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3도59분53.41초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 바.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에서 정서쪽으로 중국 산둥반도 동단과 만나는 점

조업자제해역의 범위 (제2조제4항 관련)

동해 조업자제해역: 다음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서해 조업자제해역: 다음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가.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 나.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3초 다.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 라.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	가. 북위37도00분10.09초, 동경123도59분53.41초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 바.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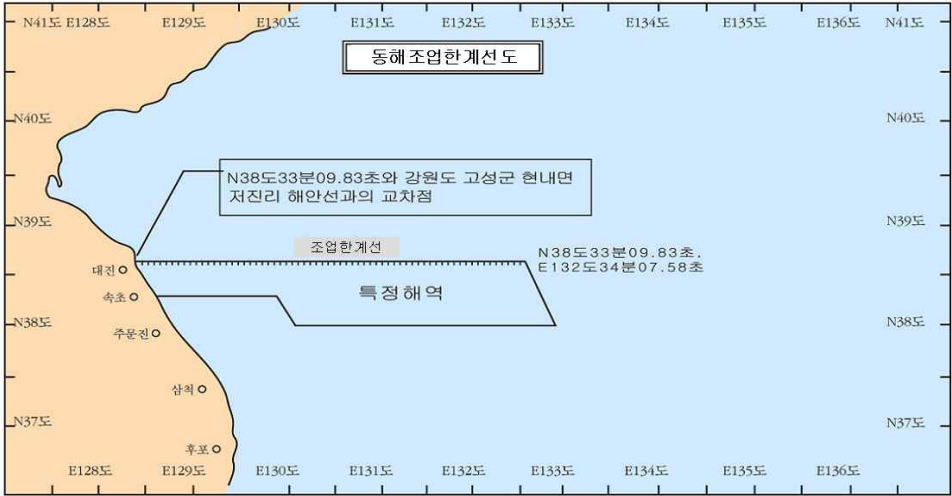
나.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50	250	500
다.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 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50	250	500
라.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1호	90	150	300
마.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2호	90	150	300
바.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3호	90	150	300
사.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4호	90	150	300
아.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제5호	90	150	30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 일반기준
 -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뭇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뭇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50	250	500

동해조업한계선도 (제2조제1항 관련)



서해조업한계선도 (제2조제1항 관련)

